

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유의사항

준비물

- 수험표, 신분증
 - ※ 수험표 상의 영문성명과 신분증 상의 영문성명이 완전히 다른 경우,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
시험 응시 관련

- 응시자는 시험실 입실완료시간 전까지 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, 이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. (본인이 신청한 시험장에서만 응시 가능하며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)

<입실 및 퇴실시간(현지시간 기준)>

구분	교시	영역	*중국 등			일본			기타국가			시험 시간 (분)
			입실 완료 시간	시작	종료	입실 완료 시간	시작	종료	입실 완료 시간	시작	종료	
TOPIK I	1교시	듣기 읽기	08:40	09:10	10:50	09:30	10:00	11:40	09:10	09:40	11:20	100
TOPIK II	1교시	듣기 쓰기	11:50	12:20	14:10	12:30	13:00	14:50	12:20	12:50	14:40	110
	2교시	읽기	14:30	14:40	15:50	15:10	15:20	16:30	15:00	15:10	16:20	70

- ※ 중국 등: 중국(홍콩 포함), 몽골, 대만, 필리핀, 싱가포르, 브루나이, 말레이시아
- ※ 중국, 대만: TOPIK II는 13:00(현지시간) 시작

- 수험표에 사진이 없거나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,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환불 기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, 환불 처리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시험 시간 관리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,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- <B형 국가의 경우> 응시자는 문제지의 유형(홀수·짝수)과 수험번호 유형, 답안지에 마킹한 문제지 유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. (이상이 있을 시 반드시 감독관에게 알립니다.)
- 시험 시간 도중에는 퇴실할 수 없으나,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조용히 퇴실할 수 있습니다. (중도 퇴실한 경우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성적처리가 되지 않음)
- 시험 도중 질병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복도로 나갔을 때에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복도감독관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TOPIK II의 경우, 1교시 결시자는 2교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환불도 받을 수 없습니다.

반입 금지 물품 안내

-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온 경우 그 자체로 부정행위가 되는 물품

-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- 시험 중, 반입 금지 물품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<한국어능력 시험(TOPIK)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>에 따라 처리됩니다.

< 반입 금지 물품 >

휴대전화, 디지털카메라, MP3 플레이어, 전자사전, 카메라 펜, 전자계산기, 라디오,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,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, 디지털시계 등 모든 전자 기기

※ **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은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하더라도 발견 시 부정행위에 해당**

답안지 작성 관련 안내

- 시험 시간 관리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,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 - 듣기 시험 중에는 듣기 답안만, 읽기/쓰기 시험 중에는 읽기/쓰기 답안만 작성해야 합니다.
-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낙서를 하거나 불필요한 표기를 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답안지 위·아래의 타이밍 마크(■)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.
- 문제지에만 답을 쓰고 답안지에 옮기지 않으면 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**답안지 작성은 감독관이 배부한 양면사인펜만 사용가능합니다.**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,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채점결과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- 듣기/읽기 답안은 **양면사인펜의 굵은 펜을 사용하고**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표기하여야 합니다. (불완전한 마킹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)
- 쓰기 답안은 **양면사인펜의 얇은 부분을 사용하여 반드시 정해진 답란 안에 작성해야** 하며, 정해진 답란을 벗어나거나 답란을 바꿔서 쓸 경우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답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**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** 있습니다. 수정테이프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조용히 손을 들면 됩니다.
- **개인이 소지한 수정테이프는 사용 가능하며,**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- 답안지를 교체할 수 있으나 시험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도 답안지는 제출해야 합니다.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,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해당 회차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.
- 시험이 종료되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와 문제지는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에 놓고,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릅니다.

- 답안 기재가 끝났더라도, 시험 종료 후 시험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사용한 문제지 및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부정행위 처리 안내

-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또는 2년간 응시 제한과 민·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부정행위 예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려고 시도하는 행위 ·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·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수험자가 따르지 않는 행위 ·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·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보려고 시도하는 행위 · 다른 수험자와 답안지나 쪽지 교환,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사례 · 전자통신기기(휴대전화, 스마트워치, 전자사전, iPad, Tablet PC 등)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행위 · 다른 수험자에게 폭력이나 강압으로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·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·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로 하는 행위 · 문제 유출·배포와 관련된 행위 · 성적증명서를 위·변조 하거나 위·변조된 성적증명서를 공적으로 사용한 행위 ·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

※ <TOPIK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>의 상세 내용은 TOPIK 홈페이지(www.topik.go.kr)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기타 유의사항

-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‘신원불명확자 서약서’ 를 작성한 응시자는 시험일 이후 3일 이내에 유효한 다른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납부한 응시료의 환불 없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.
- 중도퇴실자, 부정행위자는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.
- 한국어능력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간입니다.

한국어능력시험(TOPIK) 문제 무단 배포 금지

-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문제는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무단으로 유출, 복제, 배포할 수 없으며, 이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. 만약 이를 무시하고 불법 유출, 배포한 경우에는 민·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, <한국어능력시험(TOPIK) 부정행위자 처리규정>에 따라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.